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11. 1.
제244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발 의 자 : 오 장세 의원외 6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0월 12일
- 회부일자 : 2005년 10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05. 10. 24 :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005. 10. 28 :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번안동의 제안설명,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 장세 의원)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이와같이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토록하고 있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기금 규모는 계속하여 확대·팽창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미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히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있는 일부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수익성 창출방안의 강구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둠으로써 재원이 사장(死藏)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별 여유재원을 모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자금을 지역 SOC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함.(안 제4조)
-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
-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7조)

- 매회계년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 후 80일이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오장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여유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는등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외로 직접 기금을 설치·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의 달성과 하겠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정정책이나 목적사업의 수행이 용이한 반면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각종 기금은 남설(濫設)되고 있는 반면 유사중복기금 통합과 기금일몰제 운영 미흡,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분석평가 등 제도적장치 보완 필요, 여유자금의 수익성 창출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 문제점중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기금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전액이 장기적으로 사장되는가 하면,
- 기금별로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도 사업성기금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불합리한 기금운용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통합관리 기금표준조례안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었으며 2000년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9개시도에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뿐만아니라 2004년도 감사원의 지방기금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지방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률제정이 권고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금년 8월 4일 공포하였으며, 동법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2004년말 현재 11개기금 1,402억원을 운용하고 있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1,139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도에 있어서도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 이유

-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기획관리실장을 “기금관리관”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려는 것이며
- 아울러 조례안 체계와 용어, 문구사용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미전달을 보다 쉽고 명확히 조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중 “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한다.
- 부칙 안 제3조중 “통합기금운용관에게”를 “통합기금에”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지난 10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나, 10월 27일 오장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의 문구중 다소 불합리하거

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조정하자는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10월 28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심사를 통해 수정안 가결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10. 27.

제안자 : 오장세의원외 6명

수정 이유

-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기획관리실장을 “기금관리관”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려는 것이며
- 아울러 조례안 체계와 용어, 문구사용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미전달을 보다 쉽고 명확히 조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중 “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한다.
- 부칙 안 제3조중 “통합기금운용관에게”를 “통합기금에”로 한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중 “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안 제3조중 “통합기금운용관에게”를 “통합기금에”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운용·관리) ①통합기금은 통합기금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관리 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관리실장</p> <p>2.-3. (생략)</p> <p>제10조(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조(운용·관리)①----- ----- ----- 통합기금관리관----- -----</p> <p>②통합기금관리관----- ----- ----- ----- -----</p> <p>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통합기금관리관----- -----</p> <p>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 ----- -----</p> <p>1. 통합기금관리관----- 2.-3.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제정안과 같음)</p> <p>②----- ----- ----- -----통합기금관리관----- -----</p>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46
----------	-----

발의연월일 : 2005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오장세 의원의 6인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나. 이와같이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토록하고 있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 규모는 계속하여 확대·팽창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미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히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있는 일부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수익성 창출방안의 강구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둠으로써 재원이 사장(死藏)되고 있음.

라. 따라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별 여유재원을 모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자금을 지역 SOC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함. (안 제4조)
- 나.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
- 다.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7조)
- 라. 매 회계년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말한다.
3. “도 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4. 통합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운용·관리) ①통합기금은 통합기금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관리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기간 및 이율)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예탁금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에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⑤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⑥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⑦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금고 또는 은행에 장기 예치할 수 있다”를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⑨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⑩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대학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⑪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4. (생략)

5. 基金의 設置·運用

6~11. (생략)

② (생략)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치할 수 있다.<改正 19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改正 19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第29條 (豫算總計主義의 원칙) ①한 會計年度의 모든 收入을 歲入으로 하고 모든 支出을 歲出로 한다.

②歲入과 歲出은 모두 豫算에 編入하여야 한다.<改正 1994.12.22>

③地方自治團體가 現物로 出資하는 경우와 地方自治法 第1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치된 基金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유로 보관할 義務가 있는 現金 또는 有價證券이 있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歲入·歲出豫算외로 처리할 수 있다.<新設 1994.12.22>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定하는 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당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후 80日 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運用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00. 4. 8)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2.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5.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③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9. 7. 30, 2003. 6. 13)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관리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로 운용하며,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 금고 또는 은행에 장기 예치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의 활동
2. 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3.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기금은 도금고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

②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충청북도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대학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②기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③제2항의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학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학생업

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학생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에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99. 1. 15)

②기금은 충청북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 1. 15)

③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